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 2. 3(수)

건설교통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10. 1. 14
- 나. 제안자 : 인천광역시장
- 다. 회부일자 : 2010. 1. 14
- 라. 상정일자 : 2010. 1. 29(제180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설명 :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 검토보고 : 건설교통전문위원 김동호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가.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에 건폐율을 80퍼센트로 완화하던 것을 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준산업단지도 건폐율을 80퍼센트로 완화함.(안 제64조)

- 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원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었으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특정인의 사건이 주도되지 않도록 함(안 제68조)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해당 안건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열람할 수 있도록 기간을 단축함(안 제75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유관 행정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4조는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하는 산업단지 대상을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까지 확대하고, 제68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연임기준을 현행 2회에서 1회로 축소하며, 제75조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열람기준을 현재는 심의 일로부터 1년경과한 후부터 열람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열람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내용으로 이견이 없음.

### 4. 질의 · 답변요지

#### < 질 의 >

- 이은석 위원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요청시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기간을 단축하는 사항인데 시행령을 보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6개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기간을 정하는데 시에서는 최대 6개월로 기간을 잡은 사유와 좀더 빨리 공개될 수 없는지?

## < 답 변 >

○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 회의록 작성에 시간이 걸리며 빨리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최대 6개월의 기간을 정했음

## 5. 토론요지

- 가. 찬성 : 문희출, 강문기, 박승희, 성용기, 이은석 위원
- 나. 반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전원찬성 : 5명)

##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8. 기타사항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을 “법 제22조에 따라 확정된”으로,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에 따라”로 한다.

제21조 각 호외의 본문 중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을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먹는물관리법」에 의한”을 “「먹는물관리법」에 따른”으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6조 각 호외의 본문 중 “각목”을 “각 목”으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를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외의 본문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5호가목 중 “제2조의 규정”을 “제2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제68조제2항”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

조”를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와 같은 법 제26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 「관광진흥법」에 의하여”를 “ 「관광진흥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각 목외의 본문 중 “다음의 1”을 “다음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를 “ 각 호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 「건축법」 제32조 규정을”을 “ 「건축법」 제42조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중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외의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1항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에 따라”로,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91조 규정에 의한”을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79조에 따른”으로,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5조의2의 규정을”을 “제6조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각 목외의 본문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건축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건축법」 제4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영 제7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6조제1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7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76조제3호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6조제3호에 따라”로 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외의 본문 중 “각목”을 “각 목”으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를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각 목외의 본문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제2조의 규정”을 “제2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8조제2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와 같은 법 제26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관광진흥법」에 의하여”를 “「관광진흥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제2호자목(1) 내지 (4)의 1”을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각 목외의 본문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외의 본문 중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본문 중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을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로 한다.

제64조제3항 중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외의 본문 중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로,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외의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과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외의 본문 중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각호”를 “각호”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외의 본문 중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로,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6호 내지 제9호”를 “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각호”를 “각 호”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영 제85조제1항 규정”을 “영 제8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1항의 규정”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68조제5항 중 “2회”를 “1회”로 한다.

제75조제2항 중 “법 제113조 제6항에 따라”를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로, “심의회일부터 1년”을 “심의회 종결 후 6개월”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u>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이 법에 의한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과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u></p>	<p>제5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u>법 제22조에 따라 확정된</u>----- ----- -----<u>따른</u>----- ----- -----<u>따른</u>----- -----</p>
<p>제10조(용도지구의 신설) ① <u>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영 제31조제4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u> 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사문화자원의 관리·보호와 문화환경조성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문화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u></p>	<p>제10조(용도지구의 신설) ① <u>법 제37조제3항에 따라</u>----- ----- <u>각 호</u>----- ----- ② <u>제1항에 따라</u>----- ----- -----<u>「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에 따라</u>----- -----</p>
<p>제21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u>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u> 1. <u>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비도시지역은 예외)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준</u></p>	<p>제21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u>영 별표 1의2제2호가목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u>----- ----- ----- ----- ----- ----- 1. ----- ----- -----</p>

현행	개정안
<p>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p> <p>2. (생략)</p> <p>3.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기존 건축물 부지면적 포함)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p> <p>제46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연녹지지역안에서는 영 별표17 제1호의 <u>각목</u>의 건축물과 영 별표17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다음 <u>각목</u>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 나. (생략)</p>	<p>----- ----- ----- <u>「먹는물관리법」에 따른</u>----- ----- ----- <u>「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u>----- -----</p> <p>2. (현행과 같음)</p> <p>3. ----- ----- ----- ----- <u>해당</u>----- ----- ----- -----</p> <p>제46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u>각 목</u>----- ----- <u>제2호에 따라</u>----- <u>다음 각 호</u>----- -----</p> <p>1. (현행과 같음)</p> <p>2. ----- ----- <u>각 목</u>의 <u>어느 하나</u>----- 가. ~ 나.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3. ~ 4. (생략)</p> <p>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p> <p>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p> <p>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p> <p>다. (생략)</p> <p>6. ~ 8. (생략)</p> <p>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p> <p>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p> <p>가. ~ 나. (생략)</p> <p>11. ~ 13. (생략)</p>	<p>3. ~ 4. (현행과 같음)</p> <p>5. ----- ----- -----</p> <p>가. ----- 제2조----- -----</p> <p>나. ----- 제68조제2항----- ----- 해당 -----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와 같은 법 제26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p> <p>다. (현행과 같음)</p> <p>6. ~ 8. (현행과 같음)</p> <p>9. ----- 「관광진흥법」에 따라 ----- -----</p> <p>10. ----- 다음의 어느 하나----- -----</p> <p>가. ~ 나. (현행과 같음)</p> <p>11. ~ 13.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55조(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심지미관 지구 및 일반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2층 이상으로 한다.</p> <p>② 시장이 미관지구의 가로경관조성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최고·최저 높이를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고도지구 안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높이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p> <p>③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li> <li>3. 전기설비기술기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고압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li> <li>4. (생략)</li> <li>5. 「건축법」 제5조 및 제5조의2 규정을 적용받아 건축하는 경우</li> </ol>	<p>제55조(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73조 제2항에 따라 -----</p> <p>-----</p> <p>-----</p> <p>-----</p> <p>② -----</p> <p>-----</p> <p>-----법 제37조제1항 제3호에 따라 -----</p> <p>-----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p> <p>-----</p> <p>③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p> <p>-----</p> <p>----- 제1항 -----</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에 따라 ----- <p>-----제1항 -----</p> <p>-----</p> <li>3.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79조에 따른 ----- <p>-----제1항--</p> <p>-----</p> <li>4. (현행과 같음)</li> <li>5. -----제6조를 ----- </li></li></li></ol>

현행	개정안
<p>6. 다음 <u>각목의 1</u>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가. ~ 마. (생략)</p> <p>제56조(건축물의 부수시설 등) ① 「건축법」 제36조제2항의 <u>규정에 따라</u> 미관지구안에서 건축선이 지정되어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3. (생략)</p> <p>② 영 제73조제2항의 <u>규정에 의하여</u> 미관지구 안에서는 노출물탱크·장독대·철조망 등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③ 미관지구 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u>기타</u>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p>	<p>6. ----- <u>각 목의 어느 하나</u>----- ----- 가. ~ 마. (현행과 같음)</p> <p>제56조(건축물의 부수시설 등) ① 「건축법」 제46조에 <u>따라</u> ----- ----- ----- -----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 1. ~ 3. (현행과 같음)</p> <p>② 영 제73조제2항에 <u>따라</u> ----- ----- ----- ----- -----</p> <p>③ ----- ----- <u>그 밖에</u> ----- -----.</p>
<p>제58조(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6조제1호의 <u>규정에 의하여</u> 문화자원보전지구 안에서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자원을 해하지 않는 건축물 및 시설이 아니면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가</p>	<p>제58조(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6조제1호에 <u>따라</u> ----- ----- ----- ----- ----- -----</p>



현행	개정안
<p>다른 농수산물공판장</p> <p>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으로 <u>당해</u>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p> <p>5. ~ 8. (생략)</p> <p>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p> <p>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으로서 영 별표19 제2호자목(1) 내지 (4)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p> <p>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p> <p>가. ~ 나. (생략)</p> <p>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p> <p>12. (생략)</p> <p>② ~ ③ (생략)</p>	<p>-----</p> <p>나. ----- -----제68조제2항에 따른 ----- ---- 해당 -----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와 같은 법 제26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p> <p>5. ~ 8. (현행과 같음)</p> <p>9. ----- 「관광진흥법」 에 따라 ----- -----</p> <p>10. ----- ----- 제2호자목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 -- -----</p> <p>11. ----- ----- ---- 각 목의 어느 하나 ---- ---</p> <p>가. ~ 나. (현행과 같음)</p> <p>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p> <p>12.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의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p> <p>1. 당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 : 80퍼센트</p> <p>2. 당해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모퉁이에 있음 대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90퍼센트</p> <p>가. ~ 나. (생략)</p> <p>⑥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p> <p>⑦ 제1항과 규정에 불구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한다.</p> <p>제6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p> <p>1. ~ 21. (생략)</p>	<p>----- 제1항에도-----</p> <p>----- 각 호-----</p> <p>-----</p> <p>1. 해당 -----</p> <p>-----</p> <p>2. 해당 -----</p> <p>-----</p> <p>----- 각 목의 어느 하나-----</p> <p>-----</p> <p>가. ~ 나. (현행과 같음)</p> <p>⑥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p> <p>-----</p> <p>-----</p> <p>-----</p> <p>-----</p> <p>-----</p> <p>-----</p> <p>⑦ 제1항에도-----</p> <p>-----</p> <p>-----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p> <p>-----</p> <p>-----</p> <p>-----</p> <p>-----</p> <p>제6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p> <p>-----</p> <p>----- 각 호의 어느 하나-----</p> <p>-----</p> <p>1. ~ 21.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율) ÷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 이내</p> <p>⑦ 제1항과 제4항 규정에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 제85조제1항 규정의 비율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p> <p>⑧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p> <p>제68조(구성) ① ~ ④ (생략)</p> <p>⑤ 민간위원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p> <p>-----</p> <p>----- 해당-----</p> <p>-----</p> <p>-----</p> <p>-----</p> <p>-----</p> <p>⑦ -----</p> <p>-----</p> <p>-----</p> <p>----- 영 제85조제1항 -----</p> <p>-----</p> <p>-----</p> <p>⑧ 제1항 -----</p> <p>-----</p> <p>----- 제1항-----</p> <p>-----</p> <p>-----</p> <p>-----</p> <p>-----</p> <p>제68조(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1회-----</p> <p>-----</p>

현행	개정안
<p>제75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생략)</p> <p>② 법 제113조 제6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안건 <u>심의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u></p> <p>③ (생략)</p>	<p>제75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 -----<u>심의 종결 후 6개월</u>----- -----</p> <p>③ (현행과 같음)</p>